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3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김정환, 최정순, 최기찬, 문장길,
김상진, 송정빈, 김제리, 김생환,
이광성, 김광수, 송명화, 김경영,
유 용, 김화숙, 장상기, 이영실,
문병훈, 권영희 의원 (18명)

1. 제안 이유

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에서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시립미술관 관람지원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」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무료관람의 내용을 신설함(안 제9조제1항5호의 신설)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 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무료관람) ① 시장은 제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5. ~ 9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(무료관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<u>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<u>사람</u></p> <p>6. ~ 10. (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 및 특별전의 무료관람 대상자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비용이 발생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

- 총 비용 ≙ 42,000천원(연 평균 8,400천원)

(단위: 천원)

구 분	내용 및 조항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세입 감소	의사상자 등 무료관람 대상자 추가 (제9조제1항제5호)	8,400	8,400	8,400	8,400	8,400	42,000

다. 비용추계 전제

- 1) 의사상자는 2019년 1월 현재 서울시 거주 146명(의사자 85, 의상자 61)이고, 향후 인원 증감은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
 - 의사자 유족은 선순위자가 모두 배우자이고, 그 자녀들은 2명으로 가정
 - 의상자는 부상등급이 모두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고, 배우자 및 자녀가 아닌 활동보조자 1명과 동행하는 것으로 가정
 -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는 3명이며, 의상자와 별도로 시립미술관 기획 및 특별전을 관람하는 것으로 가정
- 2) 의사자 유족, 의상자, 의상자 배우자 및 자녀 등 의사상자 1인 당 관람횟수는 전시횟수별 1회로 가정
- 3) 서울시립미술관 기획 및 특별전 전시횟수는 최근 5년간 평균인 연1회로 하고 향후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

4) 서울시립미술관 기획 및 특별전 관람료는 2019년 금액으로 동결한다고 가정

※ 최근 5년간 기획 및 특별전 전시 현황

구분	2015	2016	2017	2018	2019
기획 및 특별전	2건	1건	1건	-	1건
관람료(원)	13,000	13,000	13,000	-	15,000

라. 비용 추계 산식

○ 비용 추계 합계액 ≒ 8,400천원

- 의사자 유족(85명×3명) × 1인 당 무료관람액(15,000원) × 연간 기획 및 특별전 개최횟수(1회) ≒ 3,825천원
- 의상자 수(61명×2명) × 1인 당 무료관람액(15,000원) × 연간 기획 및 특별전 개최횟수(1회) ≒ 1,830천원
- 의상자 가족(61명×3명) × 1인 당 무료관람액(15,000원) × 연간 기획 및 특별전 개최횟수(1회) ≒ 2,745천원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남승우

예산분석팀장 정한섭

분석관(주무관) 박인근

☎ 02-2180-7934

e-mail : yab0217@seoul.go.kr